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신기술 사후평가서 제출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21년도 국정감사)에 따라, 사후평가서 작성시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자 확대(안 제54조, 별지 제21호 서식)

- 사후평가서 작성시,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54조)
-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에게 사후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발주청 담당자가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ajajulie@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8, 3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